삼정 KPING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August 05, 2024

삼정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국세 개정세법(안) 중 국제조세 부문

2024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세법안 중 국제조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법인법 등)

-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 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의무가 면제되었는데, 개정안에서 조세조약상 비과 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 신청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급명세서 제출 또한 규정하였음 -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 현행 세법상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만 제출하 도록 하였는데, 개정안에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와 더불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세부내용은 추후 시행령 통해 발표 예정)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경정청구 기한을 기존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음. 또한, 경정 관련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내 보완요구 할 수 있는 규정 신설됨.
-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 현행 세법상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한 경우 제출기한 으로부터 2년 내 자료의 제출·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안에서 요구기간 제한을 삭제함
-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경과규정: '24.12.31.이 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개정안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정의 명확화하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등) 및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등) 내용을 반영하였음
-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참고바랍니다.

### <u>캐나다: 이전가격 분쟁 관련 과세당국의 재량적 판단은 연방법원이 전속 관할권 보</u> <u>유</u>

2024년 6월 28일 캐나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국세청장의 이전가격 하향조정(감액경정)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캐나다 조세법원이 아닌 캐나다 연방법원만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캐나다 소득세법(ITA) 제247(1)조에 따르면, 이전가격 하향조정(경정)은 캐나다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연방법원법(FCA)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과세당국의 결정을 검토하고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지만, 연방법원법에서 조세법원과 같은 다른 기관에 항소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원심 관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소득세법과 조세법원법에 따르면, 조세법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한 이슈에 대한 검토 및 항소를 독점적으로 관할하며, 이는 해당 항소가 적용되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즉, 조세법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한 과세처분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이를 변경하거나취소하려는 이의신청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납세자의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후, 캐나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일부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정상가격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면 증 액경정 및 감액경정이 함께 발생하는 상황이었지만, 과세당국은 감액경정은 거부하였습 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과세당국의 증액경정 결정 및 감액결정 거부에 대해 조세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조세법원은 과세당국의 감액경정 거부에 대하여 조세법원이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연방법원에 항소하였고, 연방법원은 조세법원의 항소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당국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납세자는 조세법원이 이전가격 감액경정 거부에 항소할 수 있는 적절한 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연방법원만이 올바른 행정법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한 구제책를 제공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가격 감액경정 거부에 대한 과세당국의 결정을 검토할 관할권은 연방법원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재량 행사와 관련된 사실이 실제 과세처분의 정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의 결정과 과세처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즉, 조세법원은 국세청장이 이전가격 감액경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 그 자체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최신예규/판례: 조심2023중3452 (2024.05.13)

제목: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중국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 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기각)

####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중국소재 A(이하 "A")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 수수료 (이하 "쟁점수수료")를 수취하면서 해당 수수료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이하 "쟁점원천세액")에 대하여 2018~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세의 경우 거주지 국인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세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8 사업연도분 OOO원, 2019 사업연도분 OOO원, 2020 사업연도분 OOO원, 2021 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 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① 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보증 용역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쟁점원천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 수수료에 대한 이자소득규정 세율에 따른 소득세 납부' 선언(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4호)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수 수료를 송금할 때 쟁점원천세액을 원 천징수하여 납부함
- A는 중국 법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지급보증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론으 로 하더라도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 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 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없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과세당국은 쟁점수수료를 이 자소득으로 표명하고 있고 원천지국 인 중국 과세당국은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 함에 따라 이는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국 과세당국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 된 것임을 의미함
- 「법인세법」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 은「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각 호의 세액을 말함"이라는 규정을 따르며,

- A는 중국 과세당국의 '지급보증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A에게 신용을 보강해 주는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 료가 이자조항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 욹
  - 쟁점수수료는 동일 조약 제22조에 규 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기타소 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 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을 위배하면서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에 근거하여 적 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 액공제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내국법 인이 원천지국에 임의로 법인세를 납부 하거나 위법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 도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인정하는 것 은 아님

이는 별도로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단 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함

- 추가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해 중국 과세당국에서 징수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쟁점원천세액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원천지국인 중국 과 세당국에 의해 원천징수된 쟁점원천 세액은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납세 의 무가 해소되어야 함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 회피 방법' 조문에 한국 이외 국가에서 납부하 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세액 공제는 한국세법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 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이 중국 과세당 국에 기타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착오 납 부한 쟁점원천세액은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 아니며 중국으로부터 되돌려 받 아야 할 세액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 상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자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 등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음에 따라 동 조약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상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므로「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2024년 관세법/FTA관세법 개정안 분석

#### 1. 개요

지난 7월 25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관세법 및 FTA관세법 관련 주요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안	관련 법령	적용 시기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 설	지 내 HJ	′28.1.1.이후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 관세법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		25.1.1. 이후
부정행위 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관세법, FTA관 세법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FTA관세법	25.1.1.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 Ⅱ. 관세법 개정안

#### 1)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관세법 제9④, 제38의5, 관세령 제32의2, 관세칙 제60의2 신설)

- 성실납부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하는 제도 신설

→ 개정이유 : 성실신고 및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정착

→ 적용시기 : '2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신 설>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확정 납세신고 
※현행 납세신고 제	도입
도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① (대상자) 모든	자
납세자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 3천만불 미만 & 관세
② (대상물품) 모 든 수입물품	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수출입안전관리우 수업체(AEO) 및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

- ③ (신고시점) 수 입신고 시
- ④ (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후 15일 이내
- (대상물품) 수입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ACVA) 물품 및 수입신고수 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 부하여 확정납세신고
- \*관세사 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 (확정신고·납부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확정납세신고 시 부여

#### 2)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관세법 제264의2, 관세령 제263의2 별표3)

-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거래내역(체납자 한정) 추가
- → 개정이유 :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 적용시기 : (제출기관) '25.1.1. 이후부터 적용, (제출자료) 영 시행일 이후 제출 요청 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과세자료* 제출기관	□ 제출기관 추가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자료	
○ 중앙관서·지자체·공공기관, 신 용카드업자, 금융회사등	○ (좌 동)
<추 가>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 자료	□ 제출 자료 추가
○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등 총 69개 자료	○ (좌 동)
<추 가>	○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자료

#### 3)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

#### (관세법 제21①)

- 관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 신설
- \*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 → 개정이유 : 관세 부과의 실효성 제고
- → 적용시기 : '25.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관세부가 가능일로부터 일정 기 간 경과시 관세부과 불가 (부과제 척기간)	□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신설
○ 원칙 5년	○ (좌 동)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환 급감면받은 경우 10년	
<신 설>	○ 수입 무신고 시 7년

#### 4) 부정행위 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관세법 제42, FTA관세법 제36①)

- 관세법령상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40%  $\rightarrow$  60%)

→ 개정이유 : 성실신고 유도 등 조세회피 방지

→ 적용시기 : (과소신고) '25.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무신고) '25.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가산세율 상향
○ (원칙) 부족세액의 10%	○ (좌 동)
○ (부정 과소신고* 시) 부족세액의 40%	- 부족세액의 <b>40 → 60</b> %
①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 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④ 그 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 한 부정한 행위	
○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 (좌 동)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	- 해당 관세액의 <b>40 →</b> <b>60</b> %
☐ FTA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가산세율 상향
○ (원칙) 부족세액의 10%	o <b>(</b> 좌 동)
○ (부정 과소신고* 시) 부족세액의 40%	<ul> <li>부족세액의 40 → 60%</li> </ul>
①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위·변조	
② 원산지증빙서류 파기	
③ 기타 부정한 행위	

#### III. FTA관세법 개정안

#### 1.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사전심사 대상에 실행 관세율을 추가

\*FTA 특혜관세 요건 충족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신청하여 회신받는 제도

#### 1) 사전심사 범위 확대

(FTA관세법 제31①, FTA관세령 제37①)

→ 개정이유 :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 적용시기 : '25.1.1.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 신청 대상 추가 및 신청불가 사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 사항을 수입 신고 전에 관세당국이 미리 심사하는	유삭제
제도	
○ (자격)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 (좌 동)
○ (방법) 수입신고 전 서류를 갖추 어 관세청장에게 신청	
○ (대상) 대통령령으로 규정	
- 물품·재료의 원산지	
- 물품·재료의 품목분류·가격·원가	
- 부가가치의 산정	

- 관세의 환급·감면
-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

<추 가>

-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 (예외)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 가
-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 정에서 정하는 사항
- (좌 동)

<삭 제>

#### 2)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

(FTA관세법 제32①)

→ 개정이유 :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 적용시기 : '25.1.1. 이후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내용 변경 대상 확대
*원산지 등을 사전심사한 결과를 기재	
한 서류로서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교	
부	
○ 관세청장이 <b>협정에서 정하는 바에</b>	○ 관세청장이 사실관계 또는
따라 사실관계 또는 상황변경 등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
는 경우 변경	경
*사실의 변경, 협정 개정으로 원산지 기준이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내용 변경 가능

#### 2.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 (FTA관세법 제9②)

- 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으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 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

→ 개정이유 : 협정관세 사후적용 확대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 적용시기 : '25.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 (원칙)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 (좌 동)
<ul> <li>(예외)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 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 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li> </ul>	
<추 가>	○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 는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 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 정 신고한 날부터 45일 이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 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 경하거나, 법원 확정판결 등으 로 변경된 경우

#### IV. KPMG 의견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법상에서도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개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가 이루어지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입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확대, 부정행위 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외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였고, 관세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 신고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는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기한을 유예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Key Contacts**

#### 삼정KPMG TAX6 본부



<u>강길원부대표(본부</u> <u>장)</u>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